



강 남 구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지도감독 협조 요청

1. 위생과-3576(2014. 2.1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을 두는 경우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종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 불법유흥주점으로 운영할 개연성있는 불임 업소에 대하여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지도감독을 요청하오며, 식품위생법 위반시 세무1과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보(위생과-3576, 2014. 2.12) 1부.
 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지방세 현황 1부. 끝.

기 획 경 제 국 장

수신자 위생과장, 도시선진화담당관

주무관	김혜정	법인2팀장	윤미경	세무1과장	신오식	기획경제국장	전결 06/17 문경수
-----	------------	-------	------------	-------	------------	--------	------------------------

협조자

시행 세무1과-12164 () 접수 ()
 우 135-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82 /전송 02-3423-8893 / walden0708@gangnam.go.kr / 부분공개